

# 붙임1

## 제출서류 안내


### < 제출서류 안내 >

구분		제출서류
지원자격 확인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등록초본 1부</li> <li>·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학위증명서 각 1부</li> <li>※ 해외 학력 보유자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 또는 해외 공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(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 제출)</li> </ul>
	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</li> <li>· 관련분야 업무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 일체 각 1부</li> </ul>
우대사항 확인 (해당자만 제출)	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</li> <li>- 국가유공자(가족) 확인서 인정 불가</li> <li>- 가점비율 명시 필수</li> </ul>
	우대사항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AI 관련 유관전공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) 해당 학위증명서 1부</li> <li>· (금융기관 AI 관련 업무 수행한 경우) 관련 분야 업무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 일체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</li> <li>· (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) 자격증 1부</li> </ul>
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진위확인을 위해 채용공고일('26.4.10.)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(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발급본 제출 요망)</li> <li>※ (해외 학력 보유자)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위증명서에 한하여 채용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*까지 허용</li> <li>* '25. 4. 10. 이후 발급분</li> <li>· 온라인 발급 서류는 문서확인번호 또는 발급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번호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</li> <li>· 제출처 기재 시 HUG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시</li> <li>·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린 후 제출(진위확인 등을 위해 이름 및 생년월일은 포함)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※경력증명서 발급 관련※</li> <li>- 경력증명서에는 본인 경력 관련 (1)근무부서, (2)담당업무, (3)근무기간(년/월/일), (4)직위 또는 직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(5)기관장 직인 날인, (6)입·퇴사일(년/월/일)이 표시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(담당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)</li> <li>* 경력증명서 상 위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붙임 양식[경력증명서] 활용</li> <li>- 채용공고일('26.4.10.) 이후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가능</li> </ul>

**< 제출서류 안내 >**

구분	제출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사 후 3년 초과로 공고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 공고일 이전 발급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서류(소득 관련 서류 등) 제출가능(해당 경우 별도 문의)하나, 이 경우 해당 기관에 경력조회 예정이며, 기관의 미협조 등으로 경력조회 불가 시 경력 인정 불가</li> <li>- 경력 자격요건 판단은 채용공고 마감일('26.4.24.) 기준으로 하며, 제출된 경력증명서는 연봉 산정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</li> </ul>

**< 지원자격 관련 서류 발급 안내 >**

구분	제출 서류	발급유형	발급기관 등
지원자격 확인 (공통)	· 주민등록초본	온라인 발급 (문서확인번호 필수 기재)	정부24 ( <a href="https://www.gov.kr">https://www.gov.kr</a> )
	※ 발급형태선택(필수) →  선택발급 * (개명인) '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' 추가 선택 * (남성) '병역사항 → 전체' 추가 선택		
	· 학위증명서	온라인 발급 (문서확인번호 필수 기재)	해당 학교 온라인 홈페이지
지원자격 확인 (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)	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온라인 발급 (문서확인번호 필수 기재)	정부24 ( <a href="https://www.gov.kr">https://www.gov.kr</a> )
	· 경력증명서	원본 서류의 스캔본 제출	해당 기관 문의

**< 우대사항 관련 서류 발급 안내 >**

구분	제출 서류	발급유형	발급기관 등	
국가 유공자	·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- 국가유공자(가족)확인서는 인정 불가 - 가점비율 명시 필수	온라인 발급 (문서확인번호 필수 기재)	정부24 ( <a href="https://www.gov.kr">https://www.gov.kr</a> )	
우대 사항 해당자	· (AI 관련 유관전공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) 해당 학위증명서	온라인 발급 (문서확인번호 필수 기재)	해당 학교 온라인 홈페이지	
	· 금융기관 AI 관련 업무 수행한 경우	관련분야 업무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	원본 서류의 스캔본 제출	해당 기관 문의
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온라인 발급 (문서확인번호 필수 기재)	정부24 ( <a href="https://www.gov.kr">https://www.gov.kr</a> )
	· (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) 자격증	사본 제출	-	

[붙임] 경력증명서 양식

경력(재직) 증명서				
인 적 사 항				
성 명	홍길동	생 년 월 일	1980. 1. 1.	
연 락 처	010-XXXX-XXXX			
입 사 일	2021. 1. 1.	퇴 사 일	2025. 12. 31.	
경 력 사 항				
근 무 기 간	근 무 부 서	담 당 업 무	직 위	고용형태
2021-01-01~2025-12-31	AX기획처	AI 기획 운영 등	연구원	정규직
-	-	-	-	-
-	-	-	-	-
징 계 사 항	해당없음			
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함				
2026년 월 일				
기 관 명	(인)	사업자등록번호	-	-
주 소				
발 급 부 서		발 급 담 당 자	(인)	
연 락 처				
※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※ 기관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기관 날인 등 위 기재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				

## 2026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직 채용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

\*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('26.1월) 참조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작성

**I****편의지원 제공 대상**

-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이 됨
-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직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,
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   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
  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**II****편의지원 제공 신청방법**

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확인	○ 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」를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,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
▼	
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	○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여부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등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
▼	
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	○ 서류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후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된 제출 기간 내 필히 제출
▼	
증빙서류 확인, 편의지원 제공 검토 및 통보	○ 증빙서류 확인 및 편의지원 제공 필요 여부 검토 ○ 유선 등을 통해 편의지원 제공 내용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

### III

##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

1. 「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」를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\*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[참고1]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
2. 편의지원 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'장애여부 관련 사항' 항목에서 아래 단계에 따라 해당사항을 선택 및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1단계 편의지원 여부 선택	2단계 장애구분	3단계 편의지원 요구사항
○ 편의지원 요청사항 - '신청' 선택	<b>【해당사항 선택】</b> <input type="radio"/> 시각장애(전맹) <input type="radio"/> 시각장애(전맹 제외) <input type="radio"/> 뇌병변장애 <input type="radio"/> 지체장애 <input type="radio"/> 청각장애 <input type="radio"/> 임신부 <input type="radio"/>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<input type="radio"/> 기타	① 장애유형 및 정도 (중증: 구 1~3급, 경증: 구 4~6급) - 시각장애 :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- 지체장애 : 상지 또는 하지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<b>※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요망</b>

3. 위 2번 '3단계 편의지원 요구사항'의 ① ~ ③ 항목은 의사진단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\*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\* 임신부 수험생인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

4.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'24.4.25.~'26.4.24.)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
\*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됨

\*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[www.hira.or.kr](http://www.hira.or.kr)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
5. 편의 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6. 편의제공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1

##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면접시험)

장애 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
지체장애	상지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○ 관련서식 확대 제공</li> <li>○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1부
	하지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○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1부
뇌병변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○ 관련서식 확대 제공</li> <li>○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1부
시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○ 관련서식 확대 제공 가능</li> <li>○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1부
청각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○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1부
기타사황	특수·중복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	○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결정	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
	임신부	○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
	과민성대장(방광) 증후군	○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	의사진단서 1부

## 참고2

## 의사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

### 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따른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후 해당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**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**의사 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 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**
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**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**(임신주수 또는 예정일 포함)

### 2. 발급일자 :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**24.4.25.~26.4.24.**) 발급(원본)

### 3. **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**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(중증, 경증)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(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)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(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)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(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)
  - 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」를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 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    -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의사진단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
  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#### 【 참고 :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】

유형 및 정도	발급내용 예시	*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상기인은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, 좋은 눈의 시력이 0.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면접 시 PT발표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공학기기 지참 및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	

### 붙임3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양식

#### 직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공사는 직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.  
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####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개명여부, 이메일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, 병역사항, 학력사항, 경력사항, 자격사항, 사진, 신원조사 결과 등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 및 제출 서류 관련 사항	채용절차 진행, 지원자격 확인, 우대사항 인정, 신원조사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보유·이용 단, 합격자에 한하여 민원처리,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지원자격, 우대자격 인정 등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미동의

#### □ 민감정보 처리 내역

민감정보 처리 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국가보훈대상자, 취업보호대상자, 등록장애인 여부 및 관련 정보	채용절차 진행, 우대사항 인정, 신원조사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보유·이용 단, 합격자에 한하여 민원처리,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※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미동의

#### □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기간
채용대행업체, 수사기관	채용절차 진행, 신원조사	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및 신원진술서 기재항목 일체	「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보유·이용 단, 합격자에 한하여 민원처리,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미동의

2026년    월    일

본인    성명    (서명 또는 인)

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

인사규정 제17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6.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12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 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붙임5

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